

2025년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융합형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『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』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많은 관심바랍니다.

2025년 04월 15일
(사)캠텍종합기술원 원장

| 지원과제 공모 개요 | | |
|------------|--|--|
| 사업명 | 2025년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 | |
| 모집기간 | 2025. 04. 15. ~ 05. 07. | |
| 사업대상 | 도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 (참여기관은 지역 산학연 가능) | |
| 사업목적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도 내 중소기업의 융합형 제품 및 기술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- 도 내 산·학·연·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융합형 공동연구개발 촉진- 융합형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발 및 출시를 통한 사업화 확대 | |
| 사업내용 | 과제분류 | 주요내용 |
| | 융합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주관+산·학·연 공동 R&D 수행- 지원과제 2개(4개 기업·관 지원 목표)- 과제 당 도비 80,000천원 지원- 각 기업·관의 특화기술 융합하여 제품·기술 연구개발 |
| | 현장수요R&D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전담기관 지원을 통한 주관기관 단독 R&D 수행- 지원과제 3개 내외- 과제 당 도비 30,000천원 지원- 기업 특화기술 융합하여 주력산업 제품·기술 연구개발 |

1. 사업 개요

○ 사업명 :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사업

§ 기술 융합이란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 이종기술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, 이종 기술 간의 융합은 과학기술적 문제해결 위주의 서로 다른 기술 분야 내 융합을 의미

§ 융합 연구란 혁신성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, 이미 견고한 기존 체제 내 분야·주체 간 경계를 허물고 융합을 통해 혁신 창출의 가교 역할 기대

○ 시행처 : 전북특별자치도

○ 전담기관 : (사)캠텍종합기술원

○ 지원내용 : 기술융합형 연구개발 과제 지원

○ 지원규모

- 융합R&D : 과제 당 80백만원, 2건

- 현장수요R&D : 과제 당 30백만원 내외, 3건 내외

- 민간부담금 : 총사업비의 20% 이상

※ 성공 판정된 종료과제의 경우 기술료 징수 대상

○ 협약 후 과제 수행기간

- 융합R&D : 협약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

- 현장수요R&D : 협약일로부터 3개월 내외

※ 과제 성격에 따라 평가위원회 및 전담기관 심의 후 수행기간 변동 될 수 있음

2. 지원 대상

○ 『중소기업기본법』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융합을 통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

○ 공모주제는 신청기업 자유에 따르며, AI, SW, ICT, 로봇틱스, 지능형 기계, 스마트팩토리·팜 등 이종 간 기술 융합형 과제를 전제로 함

○ 융합R&D 신청기업은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를 신청 요건으로 함(공동연구개발기관 포함)

3. 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선정과제의 연구개발 비용의 지원

단위 : 원, %

| 내역사업구분 | 운영형태 | 총사업비 | 기업지원금 | 민간부담금 |
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융합R&D | 공동수행 | 100,000,000 | 80,000,000 | 20,000,000 |
| 현장수요R&D | 단독수행 | 37,500,000 | 30,000,000 | 7,500,000 |
| 구성비율 | | 100% | 80% 이하 | 20% 이상 |

※ 현장수요R&D는 부가세 포함 된 금액으로 지원함

※ 과제 공모 계획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

※ 융합R&D는 부가세 제외 된 금액으로 지원함

※ 융합R&D는 사업비 책정 시 주관기관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% 이하로 책정 가능

4. 선정 절차

○ 공모 과제 선정 일정

| 주요내용 | 추진주체 | 일정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사업 공고 | 캠틱종합기술원 | ~05.07 |
| 사업계획서 접수 | 신청기업→캠틱종합기술원 | ~05.07 |
| 서면 검토 | 캠틱종합기술원-외부전문가 | ~05.09 |
| 현장 실사 | 캠틱종합기술원-외부전문가 | ~05.20 |
| 발표 심사 | 캠틱종합기술원-평가위원회 | ~05.22 |
| 결과 통보 | 캠틱종합기술원→신청기업 | ~05.26 |
| 수정계획서 제출 | 선정기업→캠틱종합기술원 | ~05.29 |
| 지원과제 협약 | 캠틱종합기술원-선정기업 | ~05.30 |

※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접수 과제 평가 방식

- 서면심사 : 사업 참여 요건 및 결격사유 조회
 - 재무건전성, 제재현황, 제출서류유무, 중복지원성 검토 등
- 현장실사 : 외부 전문가 동행 현장 실태조사로 사업장 현황 파악
 - 사업장 확인, 연구개발 역량 파악, 사업화 이력 파악 등
- 발표심사 : 평가위원회 운영하여 발표 심사 및 선정 심의
 - 과제책임자 이상의 자 출석, 과제 수행계획 발표 및 질의
 - 15분 발표 20분 이내 질의 진행
 - 배점방식 : 평가표 취합 최고·점수최고최저를 제외한 산술평균
- 사업비 심의 : 평가 종료 과제 사업비 적정성 검토 및 조정 논의
- 결과통보 : 평가 결과 통보
- 수정·보완 : 평가 고득점 기업 대상 협약 의사 확인 및 수정·보완
-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

< 현장수요 R&D 평가 항목 >

| 구 분 | 평가지표 | 평 가 요 소 | 배점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
| 지 원 필요성 (20) | 수행기관 추진의지 | - 과제책임자의 사업 추진 의지 - 신청과제 관련 연구 및 사업화 실적 | 10 |
| | 사업 목적과 부합성 | - 사업 취지 및 목적 부합정도 | 10 |
| 과제의 타당성 (40) | 계획 및 목표 명확성 | - 과제 추진계획 및 절차의 구체성 | 10 |
| | 방법의 적절성 | - 예산 책정의 근거 및 적정성 | 10 |
| | 기술성 | - 기술 융합 특성 및 혁신 | 10 |
| | 목표성과 달성 계획 | - 연구개발 주제와 목표 성과지표의 적합성 | 10 |
| - 시험방법 및 증빙방법의 적정성 | | 10 | |
| 기대효과 (30) | 사업화 | - 결과물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| 10 |
| | 지식재산권 | - 결과물 지재권 출원 계획의 명확성 | 10 |
| | 신규고용 | - 사업화에 따른 신규 고용 계획의 명확성 | 10 |
| 합 계 | | | 100 |

〈 융합 R&D 평가 항목 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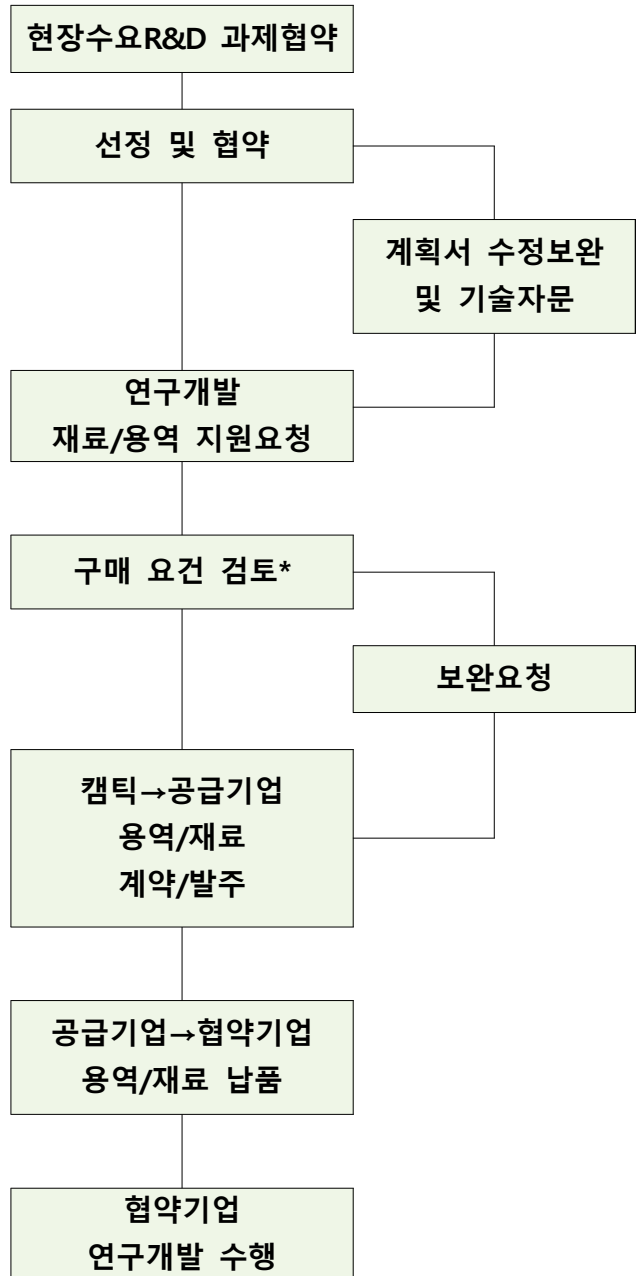
| 구 분 | 평가지표 | 평 가 요 소 | 배점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|
| 기술 융합 (10) | 기술성 | - 기술의 혁신성 - 기술 융합에 따른 파급 효과 | 10 |
| 추진 체계 (20) | 주관기관 연구역량 | 주관기관의 연구역량 - 신청과제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- 연구인력의 보유현황 및 적정성 - 핵심기술 보유 정도(지재권 등) | 10 |
| | 참여기관 연구역량 | 공동연구기관의 적정성 - 신청과제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- 연구인력의 보유현황 및 적정성 - 핵심기술 보유 정도(지재권 등) | 10 |
| | 수행체계 | 공동 연구조직의 수행체계 - 조직구성의 적정성 - 컨소시엄 내 연구개발 업무 분담체계의 적정성 | 10 |
| 추진 계획 (30) | 계획의 구체성 | - 과제 추진계획 및 절차의 구체성 | 10 |
| | 예산의 타당성 | - 예산 책정의 근거 및 타당성 | 10 |
| | 목표성과 달성계획 | - 연구개발 주제와 목표 성과지표의 적합성 - 시험방법 및 증빙방법의 적정성 | 10 |
| 기대효과 (30) | 사업화 | - 결과물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| 10 |
| | 지식재산권 | - 결과물 지재권 출원 계획의 명확성 | 10 |
| | 신규고용 | - 사업화에 따른 신규 고용 계획의 명확성 | 10 |
| 합 계 | | | 100 |

5. 지원 절차

융합R&D 선정과제 지원절차



현장수요R&D 선정과제 지원절차



- * 공통적으로 상법 상 연결회사, 특수관계인이 재직 중인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
- * 재료/용역 대금의 선지급은 불가한 것을 원칙으로 함
- * 공급기업 납세여부/취급 업종/업태/비용/건적 상세내역은 정산 검토 대상임
- * 선정 평가 시 승인된 사업비 예산서도 전담기관 검토를 거쳐 반려 및 보완 요청 받을 수 있음

6. 사업 신청 방법

○ 신청방법 : 온라인접수(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업로드)

- 접수처 : R&D종합정보시스템 <https://rnd.jbtp.or.kr>

- 공고 및 접수기간 : 2025. 04. 15(목) ~ 2025. 05. 07(금), 16시까지

○ R&D종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절차

- 가입안내: 가입유의사항 안내/시스템 활용약관 동의

- 실명인증: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(NTIS)에서 제공하는 과학기술인등록번호로 인증 후 가입

- 정보입력: 개인가입자 정보 및 소속기업정보 입력

○ 사업(과제)신청방법

- 신청기간: [과제신청] 메뉴에서 사업별 [사업공고] 확인하여 해당하는 사업의 공고 및 접수기간 확인

- 사이트맵: [과제신청] ▶ [과제공모] ▶ [과제신청]

* 접수 마감날은 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 시스템 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접수기간 종료 후 과제 등록은 불가합니다.

○ 제출서류(요건서류)

| 번호 | 서식 명 (제출 시 파일명) | 제출양식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 |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_기업명 | ※ 요청 된 서식은 일체 PDF형식으로 파일 각각 제출되어야함 |
| 2 |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_기업명 | |
| 3 |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-기업명 | ※ 제출 서류명 및 형식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음 |
| 5 | 4대보험가입자명부 4대보험가입자명부_기업명 | |
| 6 | 2024년 표준재무제표 2024년 표준재무제표_기업명 | |
| 7 | 2023년 표준재무제표 2023년 표준재무제표_기업명 | ※ 4대보험, 국세/지방세 납세증명은 제출서류는 공고기간 중 발급분을 인정함 |
| 8 | 국세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_기업명 | |
| 9 | 지방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_기업명 | |
| 해당 시 |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_기업명 | ※ 사업 신청내용 및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증빙 자료가 요청될 수 있음 |
| 해당 시 |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확인서 | |

7. 유의사항

-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
- 현장수요R&D 과제는 간접지원형태로 지원함
- 융합R&D과제는 사업비 교부 형태로 지원함
- 융합R&D과제는 CMS(보탐-e) 사용 대상 과제임
-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징수 대상 사업임
- 과제종료 후 평가결과 ‘성공’ 판정 시 도비지원금의 10%를 기술료로 납부
- 본 사업은 연구개발지원사업의 취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름
-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바는 도비R&D 공통운영요령에 따름
-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바는 전담기관 해석에 따름
- 기타 기술료 징수방법, 감면 기준 등은 전담기관 운영에 따름

8. 결격사유 및 지원제외대상

-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: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, 신청내용(기술개발)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, 개발특성,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신청 내용의 기 개발 및 기 지원 여부 : 신청과제가 기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던 과제와 유사하거나 기 개발된 과제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: 신청기관, 대표자, 책임자가 정부지원(지자체 포함) 사업의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- 참여제한 여부 : 과제책임자나 공동개발(위탁)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이거나 기관인 경우
-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: 신청기관, 대표자, 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,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,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, 2년 연속 부채비율

이 500%이상인 경우(창업 3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함.)

- 유동비율이 2년 연속 50% 미만인 기업
- 본 사업에 3년 이내 선정된 기업이 동일 유형으로 신청한 경우
- 평가 이후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선정 취소 될 수 있음.

9. 문의처

- 신청서 접수 시까지 신청관련 상담 가능(사전 상담 권장)

| 담당기관 | 전 화 | 메 일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R&BD사업본부 스마트융합팀 | 063-219-0446 | ygoh@camtic.or.kr |